

#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09월 25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영문명) Hisstory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홈페이지) <http://hisstoryinv.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302호  
(전 화) 02 - 6337 - 5595

대 표 이 사 : 박 지 훈

담 당 임 원 : (직 책) 과장  
(성 명) 이수경 (전 화) 02-6337-5595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김수연 (전 화) 02-6337-5595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9.09.25	
2. 장소	히스토리투자자문(주)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정관변경(사업목적, 공고방법 변경)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19.09.25	
-사외이사	참석(명)	-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부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이 유
1. 사업목적 추가	1. 집합투자업 1. 투자매매업 1. 투자중개업 1. 투자자문업 1. 투자자문업 1. 투자자문업 1. 투자자문업 1. 투자자문업 1. 투자자문업		영업상 형편에 의하여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3. 사업목적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목적 추가
	<p>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①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 자문업의 금융투자 업무</p> <p>1. 자본시장법 그 밖의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p> <p>1.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 업무</p> <p>1. 국내외 투자사업 및 관련업</p> <p>1. 금융자문 및 IR 등 종합 자문 서비스업</p> <p>1.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업무</p> <p>1. 실물자산의 매매, 자문업</p> <p>1. 기업의 인수, 합병에 관한 자문업</p> <p>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 투자 등 기타 관련업무</p> <p>1. 부동산 임대, 개발사업 및 경영자문업</p> <p>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p> <p>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법령상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 신고 후에는 해당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p>	<p>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①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 자문업의 금융투자 업무</p> <p>1. 집합투자업</p> <p>1. 투자매매업</p> <p>1. 투자중개업</p> <p>1. 투자자문업</p> <p>1. 투자자문업</p> <p>1. 자본시장법 그 밖의 금융관련 법령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업무</p> <p>1.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수 업무</p> <p>1. 국내외 투자사업 및 관련업</p> <p>1. 금융자문 및 IR 등 종합 자문 서비스업</p> <p>1.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업무</p> <p>1. 실물자산의 매매, 자문업</p> <p>1. 기업의 인수, 합병에 관한 자문업</p> <p>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 투자 등 기타 관련업무</p> <p>1. 부동산 임대, 개발사업 및 경영자문업</p> <p>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p> <p>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법령상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 신고 후에는 해당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p>	